

[별표 6] <개정 2006.8.11>

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(제15조제3항 관련)

구분	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(하한~상한)	적용대상자산(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)	
		대 분 류	중 분 류
1	5년 (4년~6년)	농업 및 임업	01. 농업. 다만, 과수의 경우는 구분 5(15년~25년)를 적용한다. 02. 임업,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
		광업	10. 석탄, 원유 및 우라늄 광업. 다만, 우라늄 및 토륨 광업(103)을 제외한다.
		제조업	22. 출판,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6.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(26129.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제조업 중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에 한한다) 32. 전자부품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
		건설업	45. 종합건설업 46. 전문직별 공사업
		도매 및 소매업	50.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51. 도매 및 상품중개업 52. 소매업(자동차를 제외한다)
		운수업	60.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. 다만, 철도운송업(601) 및 도시철도 운송업(60211)은 구분 5(15년~25년)를 적용한다.
		금융 및 보험업	65. 금융업 66. 보험 및 연금업 67.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		부동산 및 임대업	70. 부동산업 71.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
		사업서비스업	72.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73. 연구 및 개발업 74.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. 사업지원 서비스업
		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	76.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
		교육서비스업	80. 교육서비스업
		보건 및 사회복지사업	85. 보건업 86. 사회복지사업
		오락,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	87. 영화, 방송 및 공연산업 88. 기타 오락,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
		기타 공공, 수리	90. 기타 공공,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91. 회원단체

		및 개인서비스업	92. 수리업 93. 기타 서비스업
		가사서비스업	95. 가사서비스업
		국제 및 외국기관	99. 국제 및 외국기관
2	8년 (6년~10년)	제조업	18.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. 코크스,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.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. 다만, 의약품제조업(242)과 살충제 및 기타 농업 제조업(2431)은 구분 1(4년~6년)을 적용한다.
		숙박 및 음식점업	55. 숙박 및 음식점업
		운수, 창고 및 통신업	63.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4. 통신업
3	10년 (8년~12년)	어업	05. 일반어업, 양식업 및 관련서비스업
		광업	10. 석탄, 원유 및 우라늄 광업. 다만, 우라늄 및 토륨 광업(103)에 한한다. 11. 금속광업 12. 비금속 광물광업(연료용을 제외한다)
		제조업	15. 음식료품 제조업 17. 섬유제품 제조업(봉제의복을 제외한다) 다만, 섬유 염색 및 가공업(1740)은 구분 2(6년~10년)를 적용한다. 19. 가죽, 가방 및 신발제조업. 다만, 가죽제조업(1910)은 구분2(6년~10년)를 적용한다. 20.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(가구를 제외한다) 21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5.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6.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(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을 제외한다) 27. 제1차 금속산업 28. 조립금속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) 29.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0.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. 다만,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(3001)은 구분 1(4년~6년)을 적용한다. 31.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3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3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.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37.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
4	12년 (9년~15년)	제조업	16. 담배제조업
		운수업	61. 수상 운송업. 다만, 외항화물운송업(61112)은 구분 5(15년~25년)를 적용한다. 62. 항공 운송업
5	20년 (15년~25년)	전기, 가스 및 수도사업	40. 전기, 가스 및 증기업 41. 수도사업

비 고

1.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.
2.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.